

제 20 장

환경

제 20.1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20.2 조

환경 협정

당사국은 부속서 20-가에 기재된 다자간환경협정(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이행 한다¹⁾²⁾.

제 20.3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

1) 제20.2조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 협정상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제20.2조의 목적상, (1) “적용대상 협정”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관련 협정상의 그러한 기준 또는 미래의 의정서, 개정, 부속서 및 조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2) 당사국의 “의무”는 특히 관련 협정상 그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기준 및 미래의 유보, 면제 및 예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기소상의 재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환경법에 대하여 환경집행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환경법 집행, 그리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행사를 반영하거나 그러한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이 가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이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에 관련되는 경우, 그 것은 자원 배분이 합리적이고 선의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1목에 따른 결정에 관련성이 있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은 당사국이 면제 또는 이탈을 규정한 자국의 환경법 규정에 따라 환경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면제 또는 이탈은 적용대상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0.4 조

절차 문제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자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이용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접근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 1) 그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 2) 그러한 절차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이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자국 법에 따른 법적 의무의 위반을 제재 또는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나. 어떤 인이 자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의 행위의 결과로서 손실·손해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구제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다. 금전적 벌칙, 긴급 폐쇄,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의 결과를 완화하는 명령과 같은 제재 또는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라. 환경을 보호하거나 환경적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재판소가 이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적절한 경우, 위반의 성격 및 경중, 위반자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 위반자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다. 그리고

나. 준수협약, 벌칙, 벌금, 수감, 금지명령, 시설폐쇄, 그리고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오염의 억제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와 같은 행정·민사 및 형사적 제재와 구제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0.5 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커니즘이 제20.4조에 규정된 절차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 1)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십
- 2) 환경 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 3)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발적 환경 감사 및 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 환경 점검,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에 관하여 당국·이해당사자 및 대중간의 정보와 전문성의 자발적 공유, 또는

- 나. 환경 성과가 우수한 시설 또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정이나 환경목표 달성을 돋기 위한 허가거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수단과 같이,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복원 및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절한 경우 시장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는 유인
2.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장려한다.
- 가. 환경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유지·개발 또는 개선, 그리고
- 나. 제1항에서 확인된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수단

제 20.6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제20.7조제3항에 언급된 국가 자문위원회들로부터 접수된 견해를 포함하여 협의회의 구성원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공개 회의시간 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서면 요약을 공개한다.
3.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의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과 대중이 관심을 갖는 환경 문제에 관하여 대중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업무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한다.
4. 협의회는 양 당사국이 설립한 환경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환경협력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추구한다.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제 20.7 조

대중 참여 기회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2. 대중 참여 기회가 최적 관행의 공유와 대중의 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나. 이 장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 서면 입장문을 접수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입장에 응답하고, 그 입장 및 자국의 응답이 대중에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환경 사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경험을 가진 그 당사국 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존의 국가 자문위원회와 협의한다. 협의회는 회합할 때마다 각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자국의 국가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견해를 검토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있어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 조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을 양 당사국이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 후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이행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

동위원회에 제출한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그러한 각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0.8 조

환경 협력

1. 양 당사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이 환경보호·관행 및 기술의 개발과 증진을 포함하여 공동의 환경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양 당사국이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환경 협력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행기구에 의하여 조율되고 검토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또한 그 밖의 포럼에서의 환경협력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협력 활동에 관하여 자국이 접수하는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 협정 및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 공유한다.

제 20.9 조

환경 협의 및 패널 절차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 가능한 협의절차, 또는 관련 협정에 있는 경우, 그 밖의 절차를 통하여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그 절차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³⁾.

3.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회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사안이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때에는, 협의회는

가. 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관련 협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충분히 협의한다.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4.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

3) 양 당사국은, 제2항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에서 결정이 컨센서스로 내려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구는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양해한다.

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6. 제20.2조에서, 또는 그 조와 이 장의 다른 규정의 양쪽에서 발생하고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분쟁에서,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소집된 패널은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른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판정을 함에 있어⁴⁾

가. 환경협의회가 설치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관련 환경협정에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권한을 받은 모든 실체와 그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나. 그 당사국의 관련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가 그 협정상의 그 당사국의 의무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그 성격 및 지위에 비추어 적절한 한도에서 그 협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석상의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다. 그 협정이 그 분쟁의 어느 한 문제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허용 가능한 해석을 용인하고 피소 당사국이 그러한 하나의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제22.1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판정의 목적상 그 해석을 수용한다.⁵⁾

제 20.10 조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일정한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보호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이 그러한 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협의 및 지침은 제22.10조(절차 규칙)제4항과 합치되게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패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5) 다호의 지침은 그 밖의 어떠한 해석지침보다 우선한다.

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무역협정간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와 적용대상 협정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양 협정상의 자국 의무의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는 그 당사국이 그 적용대상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조치의 주요 목적은 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⁶⁾.

제 20.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환경법이라 함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 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적용대상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법, 규정 및 그 밖의 모든 조치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의 법,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적용대상 협정이 아닌 다자간 환경협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 나.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부속서 20-가
적용대상 협정

1.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 협정이라 함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아래에 기재된 다자간 환경협정을 말한다.
 - 가.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개정판)
 - 나. 1987년 9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조정 및 개정판)
 - 다. 1978년 2월 17일에 런던에서 채택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개정판)
 - 라. 1971년 2월 2일 람사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개정판)
 - 마. 1980년 5월 20일에 캔버라에서 채택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 바.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제포경규제협약, 그리고
 - 사. 1949년 5월 3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약
2. 양 당사국은 그 밖의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1항 목록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